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5. 9.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 단체에 민간 위탁을 추진하여
- 나. 수상레포츠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무명 :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 나. 추진근거 :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 다. 사무내용
 - 1) 각종 수상레포츠에 대한 교육 및 체험활동
 - 2)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및 계류장 관리
- 라. 시설개요
 - 1) 시설명 :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 2) 소재지 : 구미시 수출대로 326-20
 - 3) 주요시설
 - 계류장 : 수상계류장(폰툰 400㎡), 슬립웨이(L=68m)
 - 체험센터 : 체험센터 1동(2층, 538㎡)

마. 위탁기간 : 2026. 04. ~ 2027. 1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

사. 소요예산 : 해당없음(수익창출형 민간위탁)

아.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2025년 제2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3. 부서의견

가.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는 다양한 수상레포츠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체육시설로서, 전문 자격과 안전 요원을 갖춘 수상레포츠 운영 전문 단체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수익 창출형 민간 위탁을 통하여 예산 지원 없이 수탁 단체의 책임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4. 참고사항

가.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나. 관계법령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2)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 3)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관계법령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소 관 부 서 | | 체육진흥과 |
|-------------|-------|---------------------|
| 입 안 자 | 과 장 | 박 미 선 |
| | 팀 장 | 이 상 용 |
| | 담 당 자 | 황 영 환 (480-4923) |